

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

『건설기술관리법제18조』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고시된 “건설 신기술”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“신기술 현장적용 기준(2011. 9. 23 훈령 제746호))”을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

신기술 현장적용 기준

제정 2006. 7. 5 건설교통부 훈령 제623호
개정 2007. 3. 12 건설교통부 훈령 제660호
개정 2007. 9. 20 건설교통부 훈령 제681호
개정 2008. 4. 8 국토해양부 훈령 제 42호
개정 2008. 12. 29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
개정 2009. 8. 21국토해양부 훈령 제382호
개정 2011. 9. 23국토해양부 훈령 제746호
개정 2013. 4.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·고시된 신기술(이하 “신기술”이라 한다)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발주청”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5

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.

2. “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「설계자문위원회」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.
3. “기술평가기관”은 법 제1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.
4. “유사신기술”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심의 등)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, 시공,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
2.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

3.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

4.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

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신기술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소속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
⑥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.

⑦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

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유사신기술의 활용)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.

제6조(신기술의 사후관리 등)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추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(2006. 7. 5)

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3.12)

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12)

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4. 8)

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4. 8)

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12. 29)

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8. 21)

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9. 23)

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4.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

번호	심의일	신기술명 (지정번호)	신기술 개발자				공사개요			심의결과요약 ¹⁾	비고
			법인명 (개인명)	대표자	법인번호 (주민번호)	연락처	공사명	신기술공사비	계약 형태		

1) 심의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는 별도 사본 첨부

신기술 사후평가서

1. 신기술 및 공사개요

신 기술 명	(지정번호 :)			
기술개발자				
공사 개 요	발주청 (명칭전체)		계약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경쟁 <input type="checkbox"/> 제한경쟁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명경쟁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의계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	공사명 (계약시)			
	현장주소	시(도) 구(시, 군)	동(읍, 면)	리(동, 번지)
	총공사비		신기술 적용공사비	
	공사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계 약 번 호	
			입찰공고번호	
시공자		사후평가일	년 월 일	
		감리자		

2. 활용 평가

평가 항목	기존기술대비 수준(50~150)	평가내역(복수 체크 가능)	
공사비절감	()		
공기단축	()		
시공성	()	<input type="checkbox"/> 시공 난이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시공현장 관리 용이성
		<input type="checkbox"/> 시공관련 계획 및 설계 편의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적, 물적 자원 조달의 용이성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: (* 상기 이외의 내용이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)	
품질향상	(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성	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구성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능 및 외관 개선	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적 안정성
	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·보수 용이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재(재료)의 규격화·표준화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:	
안전성	()	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자 안전성 개선	<input type="checkbox"/> 시공현장 안전관리 개선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계화 또는 자동화	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:	
환경친화성	()	<input type="checkbox"/> 인체·자연 친화성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공해(소음/진동/먼지) 저감
		<input type="checkbox"/> 에너지·자원 절감	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부하 저감(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, 수질개선 등)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:	
만족도	()	매우우수(30%이상), 우수(20%이상), 양호(10%이상), 보통(0%), 미흡(0%미만)	
평 균			

※ “기존기술대비 수준”에는 동종의 기존기술을 “100”으로 보고 신기술 적용시 해당 항목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기술의 수준을 95, 110, 115, 120 등 숫자로 표기 (공사비절감, 공기단축 항목의 경우 절감금액, 단축일 내역 등을 기재)

3. 발주청 의견(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)

신기술 채택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채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추천채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○ 세부 내용 :	
시공조건(여건)	※ 해당 공사 관련 현장여건, 시공과정 등 시공조건을 기술
하자발생여부 및 조치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발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발생
○ 조치결과 : (※ 하자 '미발생' 체크시에는 생략 가능)	
신기술 적용 전·후의 기대 및 실제효과와의 비교	○ 적용 전 기대효과 : ○ 적용 후 실제효과 :
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추천 여부 및 그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추천
※ 추천 또는 미추천 사유	
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	
기타 참고사항	